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정 2023. **12. 11.** (월) 14:00 - 16:00

장소 정동1928아트센터이벤트홀 (서울 중구 덕수궁길 130)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정** 2023. 12. 11. (월) 14:00 - 16:00

**장소**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 (서울 중구 덕수궁길 130)

❖ 프로그램 일정

시간	세부내용
13:50~14:00	등록
14:00~14: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환영사 ▶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
14:05~14:10	참석자 전원 기념사진 촬영
14:10 ~ 15:00	<b>[1부] 주제 발표</b>
	발표 1.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인식과 정책 과제 ▶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표 2.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중심으로 - ▶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5:00 ~ 15:10	휴식시간
15:10 ~ 15:40	<b>[2부] 전문가 토론</b>
	좌 장 ▶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 론 ▶ 권혜진 나사렛대 아동심리교육학과 교수 ▶ 마미정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보건보육상담과 교수
15:40 ~ 16: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마무리 및 폐회



# CONTENTS

## 1부

### 주제 발표

- 발표 1.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인식과 정책 과제 ..... 3  
▶ 도남희 |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중심으로 - ..... 21  
▶ 김동훈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2부

### 전문가 토론

- 토론 1 ..... 43
- 토론 2 ..... 44
- 토론 3 ..... 45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마음과 몸이 분주할 수 있는 겨울 문턱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초대에 응해주시고,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에 보여주시는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들을 질 높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논할 때 보육교사의 질을 빼고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육교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들이 가정을 떠나 부모 외 다른 성인과의 초기 경험을 갖게 되는 주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에서 교사와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는 성인과의 관계의 표본이며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존중, 보육공동체의 협력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호보다는 그들에 대한 의무와 요구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동중심의 보육의 강조와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의 주장에 의해 보육교직원의 최소한의 권리보호마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일부 어린이집은 그들의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보육 전문가들과 현장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책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논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발제를 준비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선임연구위원, 김동훈 연구위원과 토론을 해주실 나사렛대학교 권혜진 교수님,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교수님,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미정 센터장님 그리고 토론회를 준비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11.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1부

---

주제 발표



주제발표 1

---

#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인식과 정책 과제

---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인식과 정책 과제

제12차 KICCE 정책토론회

2023. 12. 11(월)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 선임연구위원

## 목차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육교직원 권리 및 법·제도
- 보육현장의 보육교사의 권리 인식
- 보육현장의 권리 보호 실태와 요구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고충처리 서비스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 연구의 배경

---

- 보육교사에 대한 일방적 책임 전가
- 2018년 김포시 보육교사 자살 사건
- 2020년 세종시 보육교사 자살 사건
- 보육교사의 직무의 위기감 고조
-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인식 높아짐

## 연구의 필요성

---

- 지속적인 권리보호에 대한 노력
- 실질적인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실질적 성과 미비
- 유보통합을 앞두고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고민
- 교사의 권위 실추, 심각한 교권의 침해 지속
- 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 지적

## 연구의 목적

-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파악하고 보육교사로서의 교육권과 신분보장 실태 파악
-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 보육교직원의 지위 보장 및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보육교직원 권리란?

구분	권리 개념					비고
	근무여건	복지보장	교육권	신분보장	단체 활동권	
김은영 외(2013)	○					보수 제외
염지숙·강정원(2015)	○	○		○		위상 강조
김길숙 외(2015)	○	○	○	○	○	권리분석
구은미·정혜영(2018)	○	○	○	○		11개 개념
이서영·양성은(2018)	○	○	○	○		질적 연구
최효미 외(2019)	○	○			○	근로자권리
김지영(2021)	○	○	○			권리와 법 연계

## 보육교직원 권리 근거 법령

- 보육교직원은 현재 법체계 상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 보육교사는 권리구제 및 보호에 관한 절차가 유사업무를 수행하지만 교사로서의 권익과 교권을 보호받는 유치원 교사와는 차이를 가짐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은 유치원교사의 권익과 교권보호

## 작업장 폭력으로부터 보호

- **작업장 폭력**: 업무 진행 과정 또는 업무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 및 위협, 상해, 부상 또는 합리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ILO, 2016)
- 보육교사는 택시운전사, 보건 및 의료종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같이 작업장 폭력 위험에 노출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임
- 학부모,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 필요

##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

- 보육교사의 경우 교육활동권(보육활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감정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음
- 신분보장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 폭력 발생 시 신고나 구제 신청이 어려움

※ 유치원 교원의 경우, 교권 보호 위원회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을 잘 아는 교원 등이 위원회에 포함되어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음

## 보육현장에서의 권리 인식

---

- 어린이집 5개 유형의 보육교사 10명 인터뷰
- 어린이집 3개 유형의 원장 5명 인터뷰
- 어린이집 5개 유형의 부모 10명 인터뷰
- 권리보호 관련 실제 경험이나 주변의 경험 공유
- 입장 차이를 넘어 권리보호 인식 확인

## 교사들의 인식

---

- “인터뷰를 제의를 받고 보육교사로 근무해오면서 권리를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 “아이들의 인권은 존중하지만 교사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나...”
- “CCTV 설치되면서 보육교사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인식되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 원장들의 인식

---

- “학교가면 선생님들한테 엄마들이 찼찼 매잖아요...근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는 너무 함부로...”
- “부모가 할 일을 선생님들이 잡자는 거 외에는 진짜 엄마가 할 일을 다 해줘야 한다는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되고요..”
- “...학부모가 지켜야 하는 매뉴얼을 배포해달라...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되는 부모 수칙이라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 부모들의 인식

---

- “가정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보내고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느꼈어요…”
- “...다만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교사의 영역과 권리가 있는 거죠, 교사의 사생활이라든가 인간 존엄성이라든가…”
-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행복해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어요…”

## 보육현장의 권리보호 실태와 요구

---

- 보육교사 1,242명 참여함
  - 담임교사 중심
  - 가정, 민간,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 부모 500명 참여함
  - 민간, 국공립,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 3세, 4세, 2세, 5세 학부모 순

## [보육교사 응답] 부모가 권리침해

구분	부모의 언어폭력	부모의 외모 관련 지적	부모의 협박	부모의 성, 나이 등 차별	부모의 신체적 학대
전체	17.4	2.3	9.4	7.6	0.4
연령					
20대	16.0	3.7	8.0	11.0	0.0
30대	22.9	3.1	15.3	12.2	1.1
40대	17.6	2.2	8.1	5.6	0.2
50대	12.3	1.2	7.3	5.4	0.4

- ▶ 보육교사가 응답한 근무 시 부모의 권리침해의 경우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남(전체 100.0% 1,242명 중)

## [보육교사 응답] 원장, 교사가 권리침해

구분	언어적 폭력	외모신체 관련	위협, 괴롭힘	직위, 성, 나이	신체적인 폭행
전체	12.6	5.2	7.3	8.7	0.8
연령					
20대	12.3	5.5	9.8	9.2	0.0
30대	17.2	8.0	6.9	9.2	1.1
40대	11.8	4.8	7.9	8.6	0.9
50대	10.0	2.7	5.0	8.1	0.8

- ▶ 한편, 원장, 선임교사나 동료교사로 부터의 권리 침해 실태를 알아본 결과,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들은 경험이 많았음

## [보육교사 응답] 아동에 의한 권리침해

구분	아동으로부터 언어 폭력	아동으로부터 신체적 폭행
전체	14.9	22.1
연령	20대	15.3
	30대	19.5
	40대	13.6
	50대	12.7
		16.2

- ▶ 아동에 의한 보육교사에 대한 권리 침해를 경험했는지 조사한 결과, 아동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았고,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폭력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육교사 응답] 필요한 정책

### ◆ 권리침해 원인(중복응답)

1.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은 사회분위기
2. 보육교사 권리 보호에 미비한 법과 제도
3. 보육현장과 맞지 않는 정부 정책과 제도
4.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의 낮은 인식
5. 보육교사 권리보호에 소극적인 행정당국

### ◆ 필요한 정책(중복응답)

1.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2. 보육교사 존중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개선
3. 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4. 부당한 행위의 기관 차원의 제지 방안 마련
5. 교사 지원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 [부모 응답] 부모와 교사 갈등 원인

구분	교사 전문성 부족	교사 부적절한 태도	부모의 무리한 요구	부모의 무례한 태도	갈등조정 가이드라인 부재	보육교사 갈등해결 절차 인식 부족	부모 갈등해결 절차 인식 부족	기타	수 (500)
전체	9.6	23.3	53.0	39.7	40.2	18.7	14.2	1.4	219
연령 20대	0.0	30.0	50.0	20.0	40.0	20.0	40.0	0.0	10
30대	10.1	21.3	53.4	42.7	41.0	18.5	11.8	1.1	178
40대	9.7	32.3	51.6	29.0	35.5	19.4	19.4	3.2	31

- ▶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와 교사 갈등 원인으로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 보육교사 갈등조정가이드 라인 부재, 부모의 무례한 태도를 원인으로 지적함

## [부모 응답] 권리교육에 대한 필요성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계(수)
전체	0.2	2.4	55.4	42.0	3.39	100.0(5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0.0	0.0	53.3	46.7	3.47	100.0( 15)
전문대 졸	0.0	3.8	72.5	23.8	3.20	100.0( 80)
4년제 졸	0.0	2.5	52.5	45.1	3.43	100.0(366)
대학원 이상	2.6	0.0	48.7	48.7	3.44	100.0( 39)

- ▶ 부모들은 부모교육에 교사 권리 교육 내용을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 응답] 필요한 정책

### ◆ 권리침해 원인(증복응답)

1.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은 사회분위기
2.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의 낮은 인식
3. 보육교사 권리보호에 소극적인 행정당국
4. 보육교사 전문성 부족과 부적절한 행동
5. 보육교사 권리보호에 미비한 법과 제도

### ◆ 필요한 정책(증복응답)

1. 보육교사 존중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개선
2. 어린이집 운영자 대상 권리 보호 예방 교육 및 사후 처리 절차 교육/연수 강화
3. 보육교사 권리인식 전문성 교육/연수 강화
4. 부당한 행위의 기관 차원의 제지 방안 마련
5. 권리 침해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사후조치

## 보육교직원 상담 및 고충처리 서비스

### ● 보육교직원 상담 제공 서비스

- 서울시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 간성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 보육교사 소통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등

### ● 고충처리 서비스

-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도

### ● 분쟁조정기관

- 고용노동부 민원 및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 ● 유치원교사 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

- 서울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교육활동 보호 제도

## 결론 및 요약

---

-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와 폭언, 아동의 폭력 등 다양한 권리 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직무특정상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
-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의한 보육을 위한 파트너십이 중요함
-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

- 01 보육교직원 법적 근거 마련
- 02 보육교직원 분쟁조정제도 마련
- 03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 04 보육교직원 권리보호에 대한 홍보 강화
- 05 부모가이드라인 작성과 배포

## 01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근거 마련

- 현행 유관 법령 및 제도가 보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보완되어야 함
- 유치원과 달리 신분보장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음
-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의 보육활동권과 연계하여 필요함

## 02 보육교직원 분쟁조정제도 마련

- 광역거점 보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분쟁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마련
- 보육분쟁조정기구의 전담인력 확보
- 보육분쟁조정기구의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 분쟁 조정의 효과를 위해서는 상담서비스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필요

### 03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통합 지원

- 고충처리를 위한 노무·법률·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합하고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원스탑 고충상담창구(가칭) 설치·운영 필요
- 현행 상담들의 고충 민원신청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우려가 높고 만족도가 높지 않음
- 어린이집, 보육 관련 기관에서의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서비스 선호
- 법률구조공단과 협력체계 구축; 접근성과 실효성 높임

### 04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관련 인식 홍보

- 보육교직원의 권리 존중 메시지 전달
- 공익광고 제작과 캠페인 필요
-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긍정적 이미지 전달 필요
- 보육교직원에 대한 선입견 교정과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중추 역할 강조

## 05 보육지원 부모가이드라인 제시

---

- 정부차원의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 부모의 과도한 요구 자제
- 아동의 이익을 위한 부모의 보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제시 요구
- 오늘날의 부모 경험은 과거와는 차별성을 지님
- 부모의 양육 역량 증진 지원

감사합니다!

---

cando@kicce.re.kr



주제발표 2

---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중심으로 -

---

김동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sup>1)</sup>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를 중심으로 -

김동훈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 1. 서론

민간·가정 어린이집(기관보육료지원시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 수 감소에 따라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할 경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임금 지급 곤란한 상황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인건비 지원(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은 보육료 이외 별도로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나, 이외 인건비 미지원(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실정이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영아반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보육교사는 30%를 지원받고,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는 1명에 한해 100% 지원, 이외 인건비는 부모보육료 등의 수입에서 부담한다.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은 별도 인건비 지원은 없고 대신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데, 기관보육료는 정부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하는 보육료이다(보건복지부, 2023).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바우처 형태의 현행 보육료 지원 체계 하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에 따른 인건비를 일정비율 지원받는데 반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은 반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보육료만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으로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처우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질 수밖에 없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 조사 결과, 보육교사 평균호봉은 인건비지원 8호봉, 인건비 미지원 4호봉인데 반해, 실제 급여수준은 인건비 지원은 7호봉, 인건비미지원은 1호봉 수준은 이러한 현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현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현행 보육료(부모, 기관) 지원체계 하에서 반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낮은 처우는 지속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당규모의 특수보육시책 사업을 통해 인건비나 차액보육료 등을 지원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격차해소에는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해 영유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현행 보육료지원체계 하에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 인

1) 본 고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 수탁과제로 수행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임

프라 유지를 위해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처우 개선 방안을 고민하였다.

## 2. 보육비용지원 제도 및 현황

본 절에서는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먼저 보육비용 제도와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다.

### 가.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변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지원은 1992년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로(한영선, 2014),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점차 지원이 확대되었고, 2013년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기점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대상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현재 보육지원의 틀이 확립되었다.

무상보육 도입 이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고,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4. 25.). 이에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동일한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상보육 도입 이후 2016년 7월부터 0~2세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체계가 마련되어,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였다.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종일반 이용 이외 가구 아동이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2020년 3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보육지원체계가 도입되면서 어린이집 영아반의 기존 맞춤형과 종일반의 구분이 사라지고 보육수요를 고려한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면서(박진아 외, 2020)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하여 유보통합추진단 및 위원회, 자문단 등을 발족하여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유보통합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표 2-1〉 현재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구분		0~2세(영아반)		3~5세(유아반)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기관 지원	기본보육시간 (09:00~16:00)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급	
	연장보육시간 (16:00~19:30)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료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연장보육료	
부모지원		부모보육료 지원		부모보육료(누리과정 지원)	

## 나. 보육료 지원 제도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장애아 포함)에게 제공되는 부모보육료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의 만0~2세반에 지원하는 기관보육료가 있다.

〈표 2-2〉 2023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원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5세반	장애아
계	1,113,000	778,000	596,000	280,000	1,212,000
부모보육료	514,000	452,000	375,000	280,000	559,000
기관보육료	599,000	326,000	221,000	-	653,000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p.323.

기관보육료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2006년 기본보조금<sup>2)</sup>에서 출발하여 2009년 기본보육료, 2020년 기관보육료로 변화하여 왔으며, 기관보육료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2014년까지 4년간 변동이 없었으며, 이후 최저임금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다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sup>3)</sup>

## 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제도

정부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제도는 시설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크게 인건비지원기관과 기관보육료지원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3).

인건비지원기관의 경우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급하며, 반당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보건복지부, 2023). 원장 및 담임교사 인건비지원 이외에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이 있다(보건복지부, 2023).

2) 기본보조금은 최소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드는 적절한 비용인 표준보육비용에 대체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용 수준이었고(박기백 외, 2005), 이 가격을 민간보육시설 보육료에 적용할 경우 특히 영아의 부모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하는 절대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기본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서문희 외, 2014).

3)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기초한 내용임.

## 라.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

2021년 시·도와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총 2,374개였고 이 중 시·도 특수보육시책은 348개(14.7%), 시·군·구 특수보육시책은 2,026개(85.3%)로 나타났다(이원선 외, 2022). 전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은 총 1조 6천 51억원 수준이며, 이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전체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의 34.2%(5,495억원)로 가장 비중이 컸고, 다음으로 보육비용 20.1%(3,226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8.3%(2,936억원) 순이었다(이원선 외, 2022).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액에 따른 부모자부담인 차액보육료는 2023년 현재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3세 107,771원, 4세와 5세는 91,276원이었다.<sup>4)</sup>

## 마.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2023년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 2,099,100원은 2023년 최저임금<sup>5)</sup> 월 환산액인 2,010,580원에 비해 4.4%(88,520원) 더 많고, 이는 201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60,270원보다 보육교사의 1호봉 1,567,020원이 24.3%(306,750원) 더 많았던 것에 비해 차이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2006년 기본급에 기말수당 및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 수당을 포함하여 월지급액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sup>6)</sup> 일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보육시책으로 보육교사의 중식비, 근속수당 등을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특수보육시책의 수당을 비롯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바. 유사 서비스 인건비 지원 비교

보육교사 처우를 위해 유사서비스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립유치원 교사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고, 보육교사 인건비와는 용어, 수당, 직위별 호봉체계, 인건비 수준에 차이가 있다.

〈표 2-3〉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비교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 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 봉급액의 120%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 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4) 17개 시도별 보육사업안내,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수납한도액 공고 내용 등에 기초하여 작성함.

5)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2023. 7.2. 인출).

6)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기초한 내용임.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우자: 월 40,000원</li> <li>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1명당 월 20,000원</li> <li>자녀: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준용)</li> </ul>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li> </ul>

주: 보육사업안내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함.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처우개선은 기본급 보조와 수당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과정 학급 담임을 맡을 경우 기본급보조와 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월 65만원이었던 처우개선비는 매해 3만원씩 인상되어 2023년 77만원까지 확대되었으며,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기본급보조 60만원, 담임수당 13만원, 장기근속수당 4만원, 총 77만원을 지원하고 부산과 울산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기본급보조와 장기근속수당을 추가 지원하여 총 80만원을 지원하며, 시도별로 기본급 보조지원 대상기준은 약간 상이하다.

이외 교원 기본급 보조 외에 대체교사 또는 강사 인건비 지원과 육아휴직 수당 지원 등이 있고, 대체교사 지원 1일 단가는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교육과정 시간에 대해 최소 70,000원에서 최대 96,240원으로 교육청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추가 금액은 유치원에서 자체 부담한다. 또한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을 개정하여 사립유치원 교원도 국공립 유치원 교원에게 적용되는 휴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수당 지원단가는 대부분 하한액 7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육아휴직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이외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원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 3.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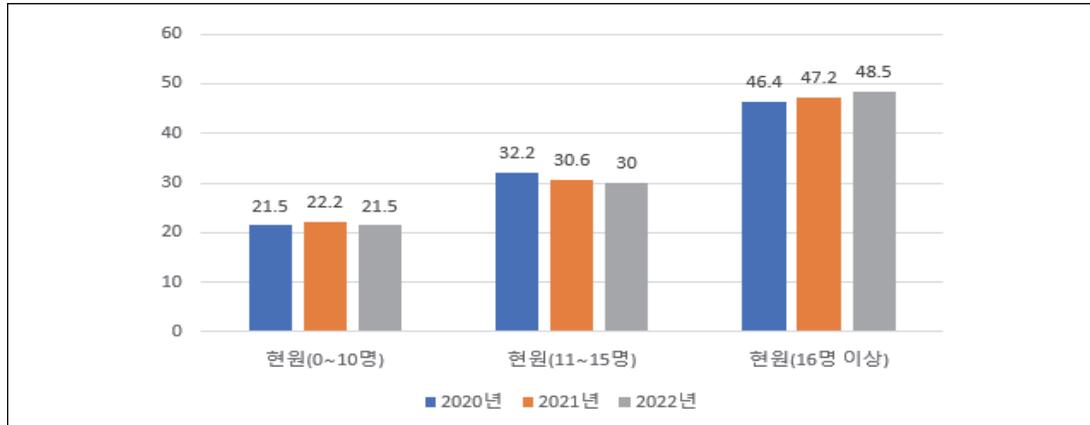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인건비 분석을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어린이집 2020~2022년 3개년 어린이집 월별 세출 자료를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의 세출자료 중, 월평균 현원이 0명, 원장이 0명, 연간세입이 1천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인건비 지출은 가정, 민간 이외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세입·세출 구조가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 가. 가정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2020~2022년 가정어린이집 현원규모를 보면 16명 이상인 경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현원 16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비율은 2020년 46.4%, 2021년 47.2%, 2022년 48.5%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3-1]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현원규모별 비율

단위: %



가정어린이집 반 구성은 현원 10명 이하인 경우는 평균 2개반으로 0-1세 혼합반과 1-2세 혼합반이 주였고, 현원 16명 이상인 가정어린이집은 혼합반보다는 단일연령반 구성이 많았다. 가정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보육교사 수가 많았고, 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원 0~10명은 3명, 현원 11~15명은 4명, 현원 16명 이상은 5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가장 많은 곳은 2022 회계연도에 월평균 13명인 곳이 있었다.

조리원 배치기준은 영유아 40인 이상인 어린이집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조리원 배치가 의무가 아니나, 가정어린이집 중 조리원을 고용한 경우는 2020년 51.9%, 2021년 56.5%, 2022년 58.7%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인건비를 각 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지급기준」으로 살펴보면,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은 최근 3년 모두 현원규모에 관계없이 1호봉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원장의 월평균 인건비는 현원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원 0~10명은 1호봉 미만, 현원 11~15명은 7호봉 수준, 현원 16명 이상은 20호봉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단위: 호봉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A) <sup>1)</sup>			보육교직원 1인당(B) <sup>2)</sup>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10명)	인건비 계	<1	<1	<1	<1	<1	<1	<1	<1	<1
	급여	<1	<1	<1	<1	<1	<1	<1	<1	<1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A) <sup>1)</sup>			보육교직원 1인당(B) <sup>2)</sup>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11~15명)	인건비 계	7	5	7	<1	<1	<1	<1	<1	<1
	급여	6	4	6	<1	<1	<1	<1	<1	<1
현원 (16명 이상)	인건비 계	12	16	20	<1	<1	<1	<1	<1	<1
	급여	10	14	17	<1	<1	<1	<1	<1	<1

- 주: 1) '인건비 계'는 급여와 수당을 포함하고, '급여'는 수당을 제외한 것임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3)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4)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5) '1'은 월평균 인건비가 1호봉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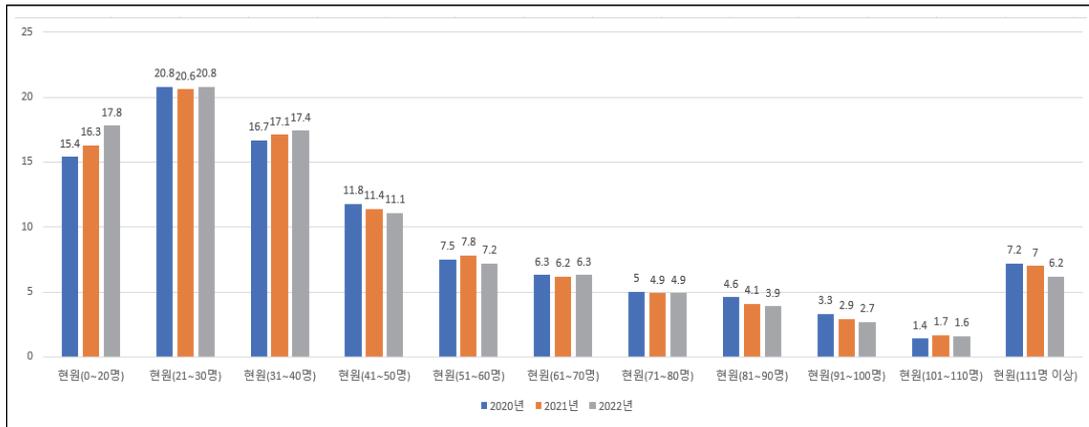
추가로 가정어린이집 세출예산과목 중 기관부담금(140) 실제 세출자료와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월 인건비 추정액을 기반으로 기관부담금을 추정한 결과를 비교하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4대보험 법정부담금은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 나.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2020~2022년 민간어린이집 현원규모를 보면 현원이 50명 이하 중소규모인 비율이 2020년 64.7%, 2021년 65.4%, 2022년 67.1%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70명 이하 규모 비율은 2022년의 80.6%로 나타났다.

[그림 3-2]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현원규모별 비율

단위: %



민간어린이집 반 구성은 2022년 기준으로 현원 0~20명인 경우 평균 반 수는 3개, 현원 21~30명은 5개, 현원 31~40명은 6개였으며 영아반 중심으로 개설되는 경향이 컸고, 규모가 작을수록 혼합연령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원 41명 이상인 경우부터 3세반을 비롯한 유아반 편성이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간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반 편성 규모와 맞물려 보육교사 수가 많았고 많은 것은 월평균 33명가지도 있었으나, 대체로 보육교사 수가 5~9명인 곳이 전체 9,572개소 중 4,984개소로 52.1%를 차지하였다.

민간어린이집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인건비는 증가하였고, 현원규모가 클수록 원장 인건비와 보육교사 1인당 인건비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월평균 인건비를 호봉으로 환산해 보면, 원장은 현원규모가 증가할수록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호봉수준이 급격히 올라가는 반면, 보육교사의 호봉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급여기준 보육교사 호봉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질수록 호봉수준이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단위: 호봉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A) <sup>1)</sup>			보육교직원 1인당(B) <sup>2)</sup>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인건비 계	<1	<1	<1	<1	<1	<1	<1	<1	<1
	급여	<1	<1	<1	<1	<1	<1	<1	<1	<1
현원 (21~30명)	인건비 계	2	4	6	<1	<1	<1	<1	<1	<1
	급여	<1	3	5	<1	<1	<1	<1	<1	<1
현원 (31~40명)	인건비 계	9	11	14	<1	<1	<1	1	1	1
	급여	7	9	13	<1	<1	<1	<1	<1	<1
현원 (41~50명)	인건비 계	12	17	20	<1	<1	<1	2	2	3
	급여	12	15	18	<1	<1	<1	1	1	2
현원 (51~60명)	인건비 계	18	20	24	<1	<1	<1	2	3	4
	급여	15	18	21	<1	<1	<1	1	2	2
현원 (61~70명)	인건비 계	21	27	29	<1	<1	<1	3	3	4
	급여	19	23	25	<1	<1	<1	2	2	3
현원 (71~80명)	인건비 계	23	30	30	<1	<1	<1	3	4	5
	급여	20	26	30	<1	<1	<1	2	3	5
현원 (81~90명)	인건비 계	30	30	30	<1	<1	<1	4	5	6
	급여	26	30	30	<1	<1	<1	3	3	5
현원 (91~100명)	인건비 계	30	30	30	<1	<1	<1	4	5	7
	급여	27	30	30	<1	<1	<1	3	4	5
현원 (101~110명)	인건비 계	30	30	30	<1	<1	<1	5	6	8
	급여	27	30	30	<1	<1	<1	3	5	6
현원 (111명 이상)	인건비 계	30	30	30	<1	<1	<1	6	7	9
	급여	30	30	30	<1	<1	<1	5	5	7

주: 1) '인건비 계'는 급여와 수당을 포함하고, '급여'는 수당을 제외한 것임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A)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3)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B)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4)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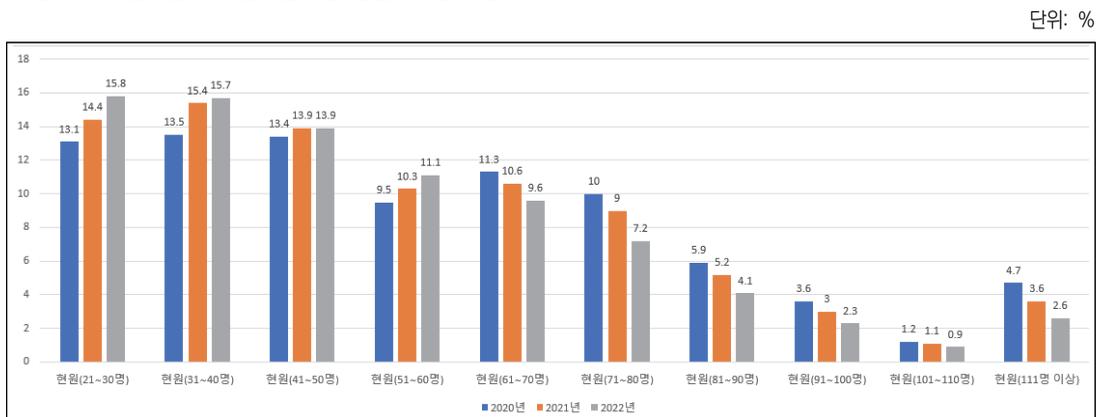
5) '<1'은 월평균 인건비가 1호봉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고, '30'은 인건비가 30호봉 이상을 의미함.

이외에 실제 세출과 법정부담금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도 가정어린이집과 유사하게 보육교직원 법정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 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현황

인건비지원 기관인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원 50인 이하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은 2020년 53.9%, 2021년 57.3%, 2022년 62.4%로 중소규모 비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원 80명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0.1%였다.

[그림 3-3]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현원규모별 비율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원이 40명 이하인 경우 유아반보다는 영아반 중심으로 반을 구성하였고, 현원규모가 61명 이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 0세반부터 5세반까지 모든 연령에 대한 단일연령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월평균 보육교사수(원장 제외)는 현원규모가 클수록 보육교사 수가 증가하였고, 2022년 기준으로 보육교사 수는 6~10명이 전체 5,782개소 중 3,088개소로 53.4%를 차지하였다.

2022년 급여기준으로, 원장은 급여기준으로는 평균 18~21호봉이 많았고, 수당을 포함하면 거의 30호봉 수준의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직원 인건비(A)는 급여기준으로는 모두 평균 1호봉 이하로 나타났으나 여기에는 조리원, 간호사, 영양사, 보조교사 등의 보육교직원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육교사(담임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보조교사 등) 인건비(B)는 급여기준으로는 평균 호봉은 9~12호봉이었고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계로 보면 호봉수준은 급여기준보다 1~2호봉 정도 증가하여 원장에 비해 수당지급은 적다고 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보육교직원 월평균 인건비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에 비해,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에 비해 기본급 이외 수당으로 가져가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월평균 인건비 호봉환산

단위: 호봉

구분		원장			보육교직원 1인당 <sup>1)</sup>			보육교직원 1인당 <sup>2)</sup>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2020	2021	2022
현원 (0~20명)	인건비 계	19	23	15	1	2	2	15	15	14
	급여	15	17	11	<1	<1	<1	13	14	12
현원 (21~30명)	인건비 계	23	24	24	3	3	4	12	12	13
	급여	17	18	18	1	1	<1	11	11	11
현원 (31~40명)	인건비 계	24	25	25	3	4	4	11	11	12
	급여	18	18	19	1	2	<1	10	10	10
현원 (41~50명)	인건비 계	26	27	27	3	4	4	11	11	11
	급여	19	20	20	1	1	1	10	10	10
현원 (51~60명)	인건비 계	26	26	27	3	3	4	10	11	12
	급여	19	19	20	<1	1	<1	9	10	10
현원 (61~70명)	인건비 계	27	27	29	2	3	4	10	11	11
	급여	19	20	20	<1	<1	<1	9	9	9
현원 (71~80명)	인건비 계	29	29	30	2	3	3	11	11	12
	급여	20	20	20	<1	<1	<1	9	10	10
현원 (81~90명)	인건비 계	29	29	30	3	3	4	12	12	13
	급여	20	20	21	2	1	<1	10	10	11
현원 (91~100명)	인건비 계	28	30	30	3	2	4	11	12	12
	급여	20	20	21	<1	<1	<1	10	10	11
현원 (101~110명)	인건비 계	30	20	30	2	3	1	13	14	14
	급여	21	21	20	1	1	<1	12	12	12
현원 (111명 이상)	인건비 계	30	30	30	2	2	3	13	13	14
	급여	20	20	20	<1	<1	<1	11	12	12

- 주: 1) '인건비 계'는 급여와 수당을 포함하고, '급여'는 수당을 제외한 것임  
 2)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수  
 3) 보육교직원 1인당 인건비 = 월평균 보육교직원 전체 인건비 / 보육교사 수  
 4) 기관부담금(법정부담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은 제외한 금액임.  
 5) '<1'은 월평균 인건비가 1호봉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함.

기관부담금 실제 세출과 법정부담금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법정 부담금과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부담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 부담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추정

본 절에서는 현재의 보육료 지원체계 하에서 반별 정원충족에 따라 민간·가정 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과 인건비 지출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였다. 어린이집의 수

입 대비 인건비 지출을 살펴보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보조금과 부모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를 주요 수입으로,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은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모형을 가정하여 어린이집 수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 가. 수입-지출 추정을 위한 인력배치 모형 및 평균 급여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기에 앞서 영유아보육법의 원장, 담임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의 인력배치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규모별 반을 구성하였으며, 기본 표준보육비용의 인력배치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반 구성 및 인력배치 모형에 더해 보육교직원의 평균호봉과 급여자료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김동훈 외, 2022)에서 실시한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급여에 기초하여 평균 호봉을 산출하였고, 보육교직원의 평균호봉과 2023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누리과정운영비를 반영하여 수입-지출 추정을 위한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를 산출하였다.

〈표 4-1〉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급여수준 환산호봉 기준)

단위: 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전체	15호봉	5호봉	시간외수당(5호봉)	5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3,815,500	2,563,500	108,700	2,672,200	2,487,400	2,487,400	2,384,700
인건비 지원	20호봉	7호봉	시간외수당(7호봉)	7호봉	9호봉	1호봉	1호봉
	4,194,400	2,689,000	114,000	2,803,000	2,787,800	2,487,400	2,384,700
인건비 미지원	12호봉	1호봉	시간외수당(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1호봉
	3,563,300	2,487,400	105,500	2,592,900	2,487,400	2,487,400	2,384,700

### 나. 수입-지출 추정치 비교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급여 기준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월급여, 2023년 부모/기관보육료 지원단가를 기반으로, 정원충족률에 따라 인건비지원과 기관보육료지원의 수입을 산출하였고, 지출은 크게 인건비와 인건비외 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과 영아반 교사는 호봉에 따른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고, 유아반 교사는 30%를 지원하고 있어,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수입 추정시 시간외수당은 제외하고 산출하였으며, 지출에서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교사인건비를 산출하였다.

여기에서는 어린이집 반 구성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반 정원을 100% 충족하는 경우, 반별 정원이 1명 부족한 경우, 반별 정원이 2명 부족한 경우를 설정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이 어느 수준인지를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반별 정원 100% 충족 시

반별 정원을 100% 충족할 경우,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60~70%였고,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70~80%로 인건비지원 보다 컸으나,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60% 대로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유사하였다. 부모부담분인 차액보육료를 지방정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현행 비용지원 구조하에서는 인건비지원과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간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표 4-2〉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정원충족률 100%)

단위: 원, %, %p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지원	수입 계(a)	17,291,800	31,889,220	44,132,120	54,345,020	66,587,920	76,082,820	88,325,720
	인건비 보조금	8,604,800	13,807,220	16,765,120	19,723,020	22,680,920	25,638,820	28,596,720
	부모보육료	8,687,000	16,227,000	24,452,000	30,912,000	39,137,000	44,879,000	53,104,000
	기관보육료	-	-	-	-	-	-	-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지출 계(b)	17,291,800	31,889,220	44,132,120	54,345,020	66,587,920	76,082,820	88,325,720
	인건비(c)	11,212,000	20,594,100	26,200,100	34,190,800	43,828,300	51,819,000	57,425,000
	인건비 이외	6,079,800	11,295,120	17,932,020	20,154,220	22,759,620	24,263,820	30,900,72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49.8	43.3	38.0	36.3	34.1	33.7	32.4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	-	-	-	-	-	-
(지출)인건비 비중(c/b, A)	64.8	64.6	59.4	62.9	65.8	68.1	65.0	
기관 보육료 지원 (I)	수입 계(a)	15,291,000	23,056,000	33,888,000	42,773,000	53,605,000	61,939,000	72,771,000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8,687,000	16,227,000	24,452,000	30,912,000	39,137,000	44,879,000	53,104,000
	기관보육료	6,604,000	4,974,000	6,521,000	8,151,000	9,698,000	11,495,000	13,042,000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지출 계(b)	15,291,000	23,056,000	33,888,000	42,773,000	53,605,000	61,939,000	72,771,000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4,919,400	4,143,500	9,789,700	11,104,200	13,019,300	13,782,800	19,429,00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3.2	21.6	19.2	19.1	18.1	18.6	17.9
(지출)인건비 비중(c/b, A)	67.8	82.0	71.1	74.0	75.7	77.7	73.3	
기관 보육료 지원 (II)	수입 계(a)	15,291,000	26,498,088	39,155,618	49,657,176	62,314,706	72,265,265	84,922,794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8,687,000	19,669,088	29,719,618	37,796,176	47,846,706	55,205,265	65,255,794
	기관보육료	6,604,000	4,974,000	6,521,000	8,151,000	9,698,000	11,495,000	13,042,000
	누리과정 운영비	-	1,855,000	2,915,000	3,710,000	4,770,000	5,565,000	6,625,000
	지출 계(b)	15,291,000	26,498,088	39,155,618	49,657,176	62,314,706	72,265,265	84,922,794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4,919,400	7,585,588	15,057,318	17,988,376	21,729,006	24,109,065	31,580,794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3.2	18.8	16.7	16.4	15.6	15.9	15.4
(수입)차액보육료	-	3,442,088	5,267,618	6,884,176	8,709,706	10,326,265	12,151,794	
(지출)인건비 비중(c/b, C)	67.8	71.4	61.5	63.8	65.1	66.6	62.8	
인건비 비중 차이(A-B)	-3.0	-17.4	-11.7	-11.1	-9.9	-9.6	-8.3	
인건비 비중 차이(A-C)	-3.0	-6.8	-2.2	-0.9	0.7	1.5	2.2	

주: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 인건비보조금+부모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지원 (I) 어린이집 :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

기관보육료지원(II) 어린이집 : 부모보육료+기관보육료+누리과정 운영비+차액보육료(연령별 전국평균)

## 2) 반별 정원 1명씩 미충원시

반별 정원이 1명씩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70% 내외로 정원 100%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고,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80%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차액보육료를 포함한 경우 인건비 비중은 70% 대로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 증가율은 낮았다. 특히,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의 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어린이집 규모가 작은 20인과 50인 어린이집의 정원 미충원시 인건비 부담비율이 다른 규모에 비해 커, 결국 인건비 이외 보육서비스에 투입되어야 한 재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표 4-3〉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반별 정원 1명 미충원시)

단위: 원, %, %p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지원	수입 계(a)	15,498,800	29,882,220	41,417,120	50,845,020	62,379,920	71,027,820	82,562,720
	인건비 보조금	8,604,800	13,807,220	16,765,120	19,723,020	22,680,920	25,638,820	28,596,720
	부모보육료	6,894,000	14,326,000	21,896,000	27,624,000	35,194,000	40,142,000	47,712,000
	기관보육료	-	-	-	-	-	-	-
	누리과정 운영비	-	1,749,000	2,756,000	3,498,000	4,505,000	5,247,000	6,254,000
	지출 계(b)	15,498,800	29,882,220	41,417,120	50,845,020	62,379,920	71,027,820	82,562,720
	인건비(c)	11,212,000	20,594,100	26,200,100	34,190,800	43,828,300	51,819,000	57,425,000
	인건비 이외	4,286,800	9,288,120	15,217,020	16,654,220	18,551,620	19,208,820	25,137,72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55.5	46.2	40.5	38.8	36.4	36.1	34.6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	-	-	-	-	-	-
(지출)인건비 비중(c/b, A)	72.3	68.9	63.3	67.2	70.3	73.0	69.6	
기관 보육료 지원 (Ⅰ)	수입 계(a)	12,026,000	19,903,000	29,806,000	37,580,000	47,483,000	54,371,000	64,274,000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6,894,000	14,326,000	21,896,000	27,624,000	35,194,000	40,142,000	47,712,000
	기관보육료	5,132,000	3,828,000	5,154,000	6,458,000	7,784,000	8,982,000	10,308,000
	누리과정 운영비	-	1,749,000	2,756,000	3,498,000	4,505,000	5,247,000	6,254,000
	지출 계(b)	12,026,000	19,903,000	29,806,000	37,580,000	47,483,000	54,371,000	64,274,000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1,654,400	990,500	5,707,700	5,911,200	6,897,300	6,214,800	10,932,00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2.7	19.2	17.3	17.2	16.4	16.5	16.0
(지출)인건비 비중(c/b, A)	86.2	95.0	80.9	84.3	85.5	88.6	83.0	
기관 보육료 지원 (Ⅱ)	수입 계(a)	12,026,000	23,146,041	34,783,294	44,066,082	55,703,335	64,100,124	75,737,376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6,894,000	17,569,041	26,873,294	34,110,082	43,414,335	49,871,124	59,175,376
	기관보육료	5,132,000	3,828,000	5,154,000	6,458,000	7,784,000	8,982,000	10,308,000
	누리과정 운영비	-	1,749,000	2,756,000	3,498,000	4,505,000	5,247,000	6,254,000
	지출 계(b)	12,026,000	23,146,041	34,783,294	44,066,082	55,703,335	64,100,124	75,737,376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1,654,400	4,233,541	10,684,994	12,397,282	15,117,635	15,943,924	22,395,376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2.7	16.5	14.8	14.7	14.0	14.0	13.6
(수입)차액보육료	-	3,243,041	4,977,294	6,486,082	8,220,335	9,729,124	11,463,376	
(지출)인건비 비중(c/b, C)	86.2	81.7	69.3	71.9	72.9	75.1	70.4	
인건비 비중 차이(A-B)	-13.9	-26.1	-17.6	-17.0	-15.2	-15.6	-13.4	
인건비 비중 차이(A-C)	-13.9	-12.8	-6.0	-4.6	-2.6	-2.2	-0.9	
정원충족률	80.0	90.0	90.9	90.7	91.1	90.8	91.1	

### 3) 반별 정원 2명씩 미충원시

반별 정원이 2명씩 부족하다고 가정할 경우,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수입에서 차액보육료를 제외한 경우 20인, 50인, 142인은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차액보육료 수입을 포함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결국 현행 체계 안에서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등 주 수입원 이외에 차액보육료, 부모부담금, 정부 및 지자체 타 지원금(교사 지원 및 각종 시책사업 등) 등을 통해 부족분을 해결하는 형태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추가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4-4〉 어린이집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중 추정(반별 정원 2명 미충원시)

단위: 원, %, %p

구분		20인	50인	77인	97인	124인	142인	169인
인건비 지원	수입 계(a)	13,705,800	27,875,220	38,702,120	47,345,020	58,171,920	65,972,820	76,799,720
	인건비 보조금	8,604,800	13,807,220	16,765,120	19,723,020	22,680,920	25,638,820	28,596,720
	부모보육료	5,101,000	12,425,000	19,340,000	24,336,000	31,251,000	35,405,000	42,320,000
	기관보육료	-	-	-	-	-	-	-
	누리과정 운영비	-	1,643,000	2,597,000	3,286,000	4,240,000	4,929,000	5,883,000
	지출 계(b)	13,705,800	27,875,220	38,702,120	47,345,020	58,171,920	65,972,820	76,799,720
	인건비(c)	11,212,000	20,594,100	26,200,100	34,190,800	43,828,300	51,819,000	57,425,000
	인건비 이외	2,493,800	7,281,120	12,502,020	13,154,220	14,343,620	14,153,820	19,374,72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62.8	49.5	43.3	41.7	39.0	38.9	37.2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	-	-	-	-	-	-
(지출)인건비 비중(c/b, A)	81.8	73.9	67.7	72.2	75.3	78.5	74.8	
기관 보육료 지원 (Ⅰ)	수입 계(a)	8,761,000	16,750,000	25,724,000	32,387,000	41,361,000	46,803,000	55,777,000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5,101,000	12,425,000	19,340,000	24,336,000	31,251,000	35,405,000	42,320,000
	기관보육료	3,660,000	2,682,000	3,787,000	4,765,000	5,870,000	6,469,000	7,574,000
	누리과정 운영비	-	1,643,000	2,597,000	3,286,000	4,240,000	4,929,000	5,883,000
	지출 계(b)	8,761,000	16,750,000	25,724,000	32,387,000	41,361,000	46,803,000	55,777,000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1,610,600	-2,162,500	1,625,700	718,200	775,300	-1,353,200	2,435,000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1.8	16.0	14.7	14.7	14.2	13.8	13.6
(지출)인건비 비중(c/b, A)	118.4	112.9	93.7	97.8	98.1	102.9	95.6	
기관 보육료 지원 (Ⅱ)	수입 계(a)	8,761,000	19,793,994	30,410,971	38,474,988	49,091,965	55,934,982	66,551,959
	인건비 보조금	-	-	-	-	-	-	-
	부모보육료	5,101,000	15,468,994	24,026,971	30,423,988	38,981,965	44,536,982	53,094,959
	기관보육료	3,660,000	2,682,000	3,787,000	4,765,000	5,870,000	6,469,000	7,574,000
	누리과정 운영비	-	1,643,000	2,597,000	3,286,000	4,240,000	4,929,000	5,883,000
	지출 계(b)	8,761,000	19,793,994	30,410,971	38,474,988	49,091,965	55,934,982	66,551,959
	인건비(c)	10,371,600	18,912,500	24,098,300	31,668,800	40,585,700	48,156,200	53,342,000
	인건비 이외	-1,610,600	881,494	6,312,671	6,806,188	8,506,265	7,778,782	13,209,959
	(수입)인건비 보조금 비중	-	-	-	-	-	-	-
	(수입)기관보육료 비중	41.8	13.5	12.5	12.4	12.0	11.6	11.4
(수입)차액보육료	-	3,043,994	4,686,971	6,087,988	7,730,965	9,131,982	10,774,959	
(지출)인건비 비중(c/b, C)	118.4	95.5	79.2	82.3	82.7	86.1	80.2	
인건비 비중 차이(A-B)	-36.6	-39.0	-26.0	-25.6	-22.8	-24.3	-20.9	
인건비 비중 차이(A-C)	-36.6	-21.7	-11.5	-10.1	-7.3	-7.5	-5.4	
정원충족률	60.0	80.0	81.8	81.4	82.3	81.7	82.2	

## 5. 정책제언

본 고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인건비 수준과 어린이집 반별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 어린이집 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보육교사 면담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경력인정이나 호봉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보육교사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며, 일부 상황에 따라 1호봉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동일 자격과 동일수준의 근무와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보수 등 처우에 있어서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었다. 향후 유보통합 추진 방안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해가면서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차이를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 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조정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에는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87).

그러나 어린이집 세입세출을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1호봉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장의 보육교사 면담결과에서는 민간·가정보육교사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매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보육교사 스스로도 이를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2023:87) 의무규정은 아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과 서비스의 질 제고 요구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지급이라는 현행 규정은 오히려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최저임금으로 계약하게 만드는데 악용될 수 있다. 이에 보육교사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별도로 취득한 자로서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도 최저임금이 아닌 1호봉부터 제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행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한 1호봉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표 5-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개선(안)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보육사업안내 p.87)</li> <li>-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li> <li>※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을 권고(‘22.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li> <li>-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서 제시한 1호봉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삭제)</li> </ul>

그러나 반별 정원이 100% 충족되지 않는 이상 현행 비용지원체계 하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부담이나 반발 또한 상당할 것이다. 특히 인건비 이외에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시설비 등의 운영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기타운영비 15% 지출까지를 감안한다면, 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비중이 더욱 커져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여력이 부족해 질 것이다. 이에 추가적 재원부담 등을 통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한다.

## 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

### 1) 기관보육료 정원 기준 지급

현원기준 바우처 방식의 비용지원구조 하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반당 정원을 충족하지 못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할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비 규모는 낮아져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으로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채용 시, 보육료(223만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39만원) 지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과 50인 이하 비율이 높은 민간 어린이집은 영아반 중심으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당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인건비 지급 부담정도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반당 정원충족률이 일정수준(50%<sup>7)</sup>) 이상인 경우 현행 기관보육료를 정원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최소한 보육교사의 질을 담보하고,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기관보육료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며, 추가 지원된 기관보육료는 담임교사 인건비 지출에 70% 이상 지출을 의무화하여 추가 비용지원이 담임교사 인건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 재원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아반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이럴 경우

7) 국공립어린이집 등 인건비지원 기관은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 지원기준은 0세반은 정원 3명 중 재원아동 2명 이상, 1세반은 정원 5명 중 재원아동 3명 이상, 2세반은 정원 7명 중 재원아동 4명 이상, 3세반은 정원 15명 중 재원아동 8명 이상, 4세 이상반은 정원 20명 중 11명 이상으로 반당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386).

중소규모 어린이집에게 영아반 위주 반 개설을 더욱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집 입장에서 현 원조개기 등을 통한 변칙적 운영의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 2) 반별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정원충족률이 50% 이상인 경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연령반별 담임교사에게 보육교사 인건비(1호봉)를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 방안은 '기관보육료 정원 기준 지급'과 유사하나, 보육료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도 평균호봉 수준으로 인건비를 분리하여 지원하며, 운영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보육교사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비도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건비지원과의 개념적 차별화가 약해진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의 인건비 수용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3)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반당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지원 방안으로는 추가 기관운영비 지원을 들 수 있다. 앞의 기관보육료 정원기준 지급 방안은 현행 기관보육료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인건비로의 사용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나,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은 정원충족률 50% 이상시 일정금액의 기관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지원이 아닌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수입과 인건비지출을 분석한 결과, 반별 정원 대비 현원 1명 또는 2명 부족할 때,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비중이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일정수준의 기관운영비를 지원하여 정원 미충족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다.

## 4) 차년도 보육교사 인건비 1호봉 인상 반영시 기관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동일한 수준(최저임금)으로 계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 10년 이상의 고경력자라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불문율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인상할 경우 인건비 외의 운영비나 기타운영비 지출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경력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인상해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차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재계약시 전년대비 인건비 1호봉을 인상하여 반영시 인건비 인상분 이상의 기관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사전방식이 아닌 사후지원 방식으로 호봉인상을 반영한 어린이집에 한해, 추가로 소요되는 차년도의 전년대비 호봉 인상액과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기관부담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을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호봉인상을 반영하여, 제한적이지만 실질적 임금 인상을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며, 이렇게 할 경우 어린이집 또한 보육교사 1호봉 인상에 따른 추가분을 재정지원 받음으로써 별도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다.

#### 5) 인구감소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

2023년 현재 농어촌 등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받을 받고 있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11만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어린이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특히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발생우려, 보육교사의 공급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sup>8)</sup> 어린이집 보육교사까지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동훈·최윤경·강은진·김나영·김진희·김형미·류한국·김태우·정유나(2022). 표준보육비용 산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박기백·김현숙·김우철·김형준(2005). 표준보육·교육단가 및 적정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박진아·최효미·최윤경 (2020).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체계 개편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보건복지부(각 년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4.25.).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1236&SEARCHKEY=TITLE&SEARCHVALUE=%EB%A7%9E%EC%B6%A4%ED%98%95+%EB%B3%B4%EC%9C%A1](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31236&SEARCHKEY=TITLE&SEARCHVALUE=%EB%A7%9E%EC%B6%A4%ED%98%95+%EB%B3%B4%EC%9C%A1)에서 2023. 7. 5. 인출
- 서문희·이혜민. (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원선·김지연·신혜영·한찬희·권주원(2022). 2021 지방정부 특수보육시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한영선(2014). 정부의 자녀양육 보조금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6), pp.89-107.

8) 2023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은 229개 지역 중 89개 지역임(<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3. 10.20.인출).

2부

---

전문가 토론



## 토론 1

## 토론 2

## 토론 3



제12차 KICCE 정책토론회

#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